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49호 2016. 02. 04.(목)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67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82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91호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6-167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제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6. 2.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획 지		비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A-1	17	1-1	401.7		A-1	17	1-1-1	200.7	
							1-1-2	201.0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 열람 장소에 비치
8.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577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182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관련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라 신청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 예비 합격자 인원 확대
- 선발확정자의 제출서류 항목 추가 등

2. 주요내용

- 제6조 제1항의 신청서식(별지 제1호서식) 변경
 - 신청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 기타 현실을 반영하여 서식내용 변경
- 예비 합격자 인원 확대 : 모집정원의 5% 내 → 10% 내
- 선발확정자의 제출서류(주민등록초본) 항목 추가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 제18조 제5항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2016. 2. 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104,
FAX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개인정보 관련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라 신청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 예비 합격자 인원 확대
- 선발확정자의 제출서류 항목 추가 등

3. 주요내용

- 제6조 제1항의 신청서식(별지 제1호서식) 변경
 - 신청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 기타 현실을 반영하여 서식내용 변경
- 예비 합격자 인원 확대 : 모집정원의 5% 내 → 10% 내
- 선발확정자의 제출서류(주민등록초본) 항목 추가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를 “각 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

제2조제2호 중 “서구”를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50%”를 “50퍼센트”로, “초과될때에는”을 “초과될 때에는”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5조 중 “서구구정소식”을 “구 구정소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는 모집기간중”을 “사람은 모집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초과될시에는”을 “초과될 시에는”으로, “5%내에서”를 “10퍼센트 내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다음 각호의”를 “사람은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민등록초본

제7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무기간동안”

을 “근무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8조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업대학생신청서					
사진부착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소				연락처	
				주택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성명	
학교명				학과 및 학년	
생활구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무주택자 ()				
<p>상기와 같이 부업대학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도장 또는 서명)</p>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자격) 부업대학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1. <u>전문대학이상 재학생</u></p> <p>2. 모집공고일 전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p> <p>3.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 선발(모집정원의 50% 이내)하고 모집정원이 초과될때에는</u> <u>추첨에 의한다.</u></p>	<p>제2조(자격) ----- <u>각 호에</u> -----.</p> <p>1. <u>전문대학 이상 재학생</u></p> <p>2. ----- <u>서구(이하 "구"라 한다)</u>-----</p> <p>3.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에 따른 ----- <u>50퍼센트</u> ----- <u>초과될 때에는</u> -----.</p>
<p>제3조(채용기간 및 근무시간) 부업대학생 채용은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 중 <u>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0일 범위 내에서</u> 근무한다. 다만, 공휴일은 제외한다.</p>	<p>제3조(채용기간 및 근무시간) ----- ----- <u>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u>범위에서</u> -- -----.</p>
<p>제5조(모집방법) 부업대학생을 모집할 때에는 이를 <u>서구구청소식</u> 및 각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개 모집한다.</p>	<p>제5조(모집방법) ----- ----- <u>구 구청소식</u> ----- -----.</p>
<p>제6조(선발) ①제2조에 해당하는 <u>자</u>는 <u>모집기간중</u> <u>구청 주관부서에</u>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선발) ①----- <u>사람은 모집기간 중</u>----- ----- -----.</p>

②모집정원이 초과될시에는 추천
 일을 정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별
 도의 방법에 따라 공개추첨하고
 모집정원의 5%내에서 예비 인원
 을 확보하여, 포기자가 발생되었
 을 때 즉시 결원을 보충토록 한다.

③선발확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신설>

제7조(근무) ① (생략)

② 부업대학생이 3일 이상 무단으로
 근무에 임하지 않거나, 기타 공무원
 에 준하는 복무규정 위배 시에는 소
 속부서장이 주관부서와 협의 후 근
 무중단을 명할 수 있다.

③ 부업대학생은 근무기간동안 매
 일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소속 부서장은 부업
 대학생의 근무전반의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제8조(실비보상) 부업대학생의 보수
 는 일용인부 1일단가에 준하는 예
 산 범위내에서 근무종료일에 주관
 부서에서 일괄지급한다.

②----- 초과될 시에는 --

 ----- 10퍼센트 내에서 ---

 -----.

③----- 사람은 다음 각 호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주민등록초본

제7조(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그 밖의 -

 -----.

③ ----- 근무기간 동안

 -----.

제8조(실비보상) -----

 -- 범위-----
 -----.

(별지 제1호서식)

부업대학생신청서					
사진부착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동 변지			연 락 처	
				☎	H·P
세대주관계	세대주와의관계		세대주성명		
학교명			학과및학년		
생활구분	생활보호대상자 () 무주택자 ()				
상기와 같이 부업대학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도장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부업대학생신청서					
사진부착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소				연 락 처	
				자택	H·P
세대주와의관계			세대주성명		
학교명			학과및학년		
생활구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무주택자 ()				
상기와 같이 부업대학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도장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관계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191호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0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4.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 【안 제1조~제2조】
- 조직·인력 운용 및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안 제3조~제4조】
-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안 제5조】
- 지도·감독 【안 제6조】
 -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기관의 사무 총괄 지도·감독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기구·정원변동, 임직원 채용·면직, 보수체계 등의 규정 제·개정 시 주무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안 제7조】
-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8조~제9조】
 - 위원은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가능
 - 위원회 간사 : 출자·출연 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장
- 기관장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 【안 제11조】
 -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 성과계약 체결
 -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 기간 : 1월1일 ~ 12월31일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서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계약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

○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안 제12조~제13조】

- 경영실적 평가계획 수립 통보(매년 12월)
-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진단 수행(경영평가단 구성 운영 또는 전문 기관 위탁)

○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및 경영실적 평가 위탁 【안 제14조~제15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560-4064,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총괄 현황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2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라 한다)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2.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한명이 된 때

제3장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법 제6조와 영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서구의회 의원 제외)
2. 구청장이 지명하는 서구 공무원(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범위)
3. 영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소집
2. 회의서류 작성 및 보고
3. 회의록의 작성·관리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건 발생 시 제안설명은 주무부서의 장이 한다.

⑥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출자·출연 기관의 평가

제10조(평가의 종류)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제11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서구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서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인천광역시 및 서구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

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경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 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경영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영 제20조제2항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

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01.01부터 시행한다.